



# 광진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 제출 (서행심 2015-1342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)

---

1. 서행심 2015-1342(2015.10.27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서 및 요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.

가. 사 건 명 : 서행심 2015-1342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

나. 당 사 자

- 청 구 인 : 나일희

- 피청구인 : 광진구청장

다. 사건개요

-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‘2015.10.25. ~ 2017.10.24’ 까지의 이 사건 휴게소 운영을 위한 신규운영자 선정과정에 사유 없는 취소공고와 재공고 실시 등 입찰비리의 의혹이 있고, 위 취소공고와 재공고로 입찰일정이 지연되면서 입찰결과 공고도 지연 되었으며, 입찰결과 공고가 행정정보시스템상에 공개되지 않는 등 여러문제가 있었으므로, 이 사건 입찰공고가 나올 때까지 혹은 청구인이 이 사건 휴게소에서 철수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고 이 사건 사용허가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바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,

- 청구인이 이 사건 사용허가 기간 후에도 이 사건 휴게소를 점유한 것은 이 사건 입찰과정의 부당성을 밝히고, 부당한 입찰로 인한 청구인의 투자손실을 줄이기 위한 자구행위였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이종의 불법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.

라. 답변요지

-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1차 처분의 절차상 하자만 보완하여 재처분 한 것인 바, 처분 경위, 처분 내용, 산정 근거가 서행심 2015-383호로 이 사건 1차 처분을 다투던 당시 제출했던 사유와 완전히 동일함.

- 서행심 2015-383호 재결에서는 “청구인이 이 사건 입찰과정에 제기했던 각종 의혹들은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한 것이며, 이 사건 입찰과정에 대한 비리의혹의 당부, 진실을 떠나서 청구인의 변상금 납부 의무가 인정된다”고 함으로써, 이 사건 1차 처분의 실제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 사건 1차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만을 문제 삼음에 따라, 피청구인이 2015. 6. 30. 청구인에 대한 사전통지를 함으로써 그 절차적 하자까지 보

